

**『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』
2021년도 뿌리기업 근로환경개선 지원사업 모집공고**

인천광역시와 (재)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인천 소재 뿌리업종 관련 중소·중견 제조기업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 친화적 직장문화 및 고용확대를 위해 근로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.

2021년 8월 30일
인천테크노파크원장

I 사업개요

- 사업명 : 2021 뿌리기업 근로환경개선 지원사업 (6차)
- 모집기간 : 2021년 8월 30일 ~ 예산 소진 시 까지
- 지원대상 : 인천 소재 중견·중소 뿌리기업
- 지원내용 :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
- 참여방법 : 인천 기업지원 종합시스템 비즈오케이 (<https://bizok.incheon.go.kr>) 온라인 신청
- 수행기관 : 인천테크노파크

II 지원내용

- 지원규모 : 68개사 내외 지원 ※ 지원규모는 기업별 지원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
- 지원금액 : 신규 채용약정 기준에 따라 최대 30백만원 (부가세 별도)

구분	채용약정 인원	지원금액	비고
지원금액	1인	15백만원 이내 지원	자기부담금 20%
	2인	30백만원 이내 지원	이상 구성필요
사업비 구성 예	사업비 3750만원 = 국고보조금 3000만원(80%) + 자기부담금 750만원(20%)		

※ 부가세 및 각종 수수료 등은 사업비에 불포함하며 전액 수혜기업이 부담

- 지원내용 :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 및 물품 비용 지원

구분	지원내용
근로환경개선	화장실, 휴게실, 체력단련실 등 근로환경개선에 필요한 공사·개보수 지원
작업장 안전확보	작업장 내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시설물 설치 비용지원
코로나19 방역용품	마스크, 손소독제 등 코로나19 대응 소모품 지원

III 자격요건 및 채용약정

○ 참여 자격요건

구분	자 격 요 건
인천 소재 중견 · 중소 제조 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뿌리업종 인증 기업 (업종분류번호 및 뿌리기업확인서 확인) ▶ 실제 지원 사업장(공장) 소재지가 인천인 기업 ▶ 공장등록 제조기업 ▶ 공장미등록 제조기업(공장건축면적 500㎡ 미만에 한함, 이상일 경우 공장등록증 필수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공장건축면적 500㎡ 미만의 미등록공장은 건축물관리대장 및 기타 증빙 필요 ② 건축물 관리대장상 공장 또는 제조소로 표기되어있어야 함 ※ 신청기업은 주 사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여야하며, 사업장(공장)에는 실제 제품 제조 공정이 존재하여야함 ▶ 사업개시일 1년 미만 기업은 신청 불가 (업력기준) ▶ 사업장 이전 계획이 있을 경우 신청 불가 ▶ 남동구, 부평구, 서구 소재지 기업 우대 ▶ 매출액 10억 ~ 100억 규모의 중소기업 우대
채용 약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사업 선정 완료 후 협약을 통해 신규채용인력 약정 진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한민국 국민 (국내 거주지 제한 없음) - 신규 채용인력은 사업종료일 기준 (2021. 11. 30.) 12개월 이상 채용유지 필수 ※ 채용 불이행시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▶ 4대 사회보험 가입자이며, 주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상시근로자 (정규직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동일기업에 지난 6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있을 경우 인정 불가 ※ 신청기업 대표 및 임원과 직·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친인척 관계(직계비존속, 형제, 자매 등)에 해당할 경우 인정 불가
사후 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최대 36개월 간 기업정보 활용(고용유지 실태, 매출성과 점검 등) 동의 필수

※ 위 모든 사항들은 선정과정에서 단계적인 평가를 통하여 확인하며, 기업이 고의적·악의적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거나 부정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제외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

○ 지원 제외 대상 기업

지원 제외 대상 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▶ 임금체불, 최저시급 미만, 근로계약서 미작성, 부당노동행위강요,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 등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 ▶ 중앙부처, 지자체 등에서 동일·유사 지원을 받은지 3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단, 동일·유사지원에서 5백만원 미만으로 지원 받았을 경우 지원 받은 다음해부터 참여가 가능함 - ‘클린사업’ 수혜중복 무관. 단, 같은 항목 지원 불가 ▶ 그 외 운영기관 선정과정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---------------------	--

IV 신청접수 및 평가·선정

- 접수기간 : 2021년 8월 30일 ~ 예산 소진 시 까지
- 신청방법 : 인천 기업지원 종합시스템 비즈오케이 (<https://bizok.incheon.go.kr>) 통한 온라인 신청
- 비즈오케이 신청 이후 5일 이내(주말·공휴일 제외) 모든 구비 서류 제출
- 지원절차

모집 · 평가	① 모집공고(ITP)	모집공고(ITP 홈페이지 및 비즈오케이 웹사이트 등)
	② 온라인 신청·접수(신청기업)	비즈오케이에서 사업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
	③ 평가 및 선정(ITP → 신청기업)	서류접수(적격판정, 원가분석), 2차 현장평가, 3차 심의위원평가
사업 수행	④ 선정 및 3자협약 (ITP ↔ 선정기업 ↔ 공급기업)	지원사업자 통보 및 협약 체결. 사업신청기업, 공급기업, ITP 간 3자 협약체결 (공사 시공 및 신규채용 협약 등)
지원 금액 지급	⑤ 지원금 선금 지급 (ITP → 공급기업)	사업신청서 및 협약내용을 기반으로 선금 (최대 70%)
	⑥ 성과 확인 및 잔금 지급 (ITP ↔ 선정기업 ↔ 공급기업)	사업완료보고(기업) 및 정산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
	⑦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	사업종료 후 채용유지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

- 유의사항

구분	세부사항
지원 불가항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설 개보수는 자가 사업장만 가능 (작업장 안전 확보 및 코로나19 대응 방역용품의 경우 지원 가능) - 신축은 불가하며 인테리어 및 리모델링에 한하여 지원 가능 - 전체 근로자를 위한 시설만 가능하며 특정인 (대표 및 임원)을 위한 시설은 지원 불가 - 부지 및 건물 매입비, 기존 시설 매입비, 임차료, 이자등은 지원 불가 - 시설 개보수 시 건축물현황도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시설은 지원 불가 - 1년 이내의 사업장 이전 계획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(관내 이전의 경우 코로나19 대응 방역용품 구매 가능) - 단순 물품구매의 경우 지원 불가 (냉난방기, 세탁기 등)

○ 신청기업 제출서류 (통합제출 서류 외 추가제출)

순번	구분	제출서류	서식번호
1	통합	(근로환경개선)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	1
2	통합	공장등록증 1부 (사본)	-
3	통합	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('19, ' 20) 각 1부	-
4	통합	(신청일 기준)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	-
5	통합	표준재무제표 (손익계산서포함) ('18, '19, '20) 각 1부	-
6	통합	납세증명서(국세, 지방세) 각 1부	-
7	통합	사업자등록증 1부 (사본)	-
8	통합	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 1부 (사본)	-
9	통합	견적서 및 비교 견적서	-
10	통합	뿌리기업지원패키지 참여신청서(기업용) 1부	2
11	통합	행정사항 협조 확인서 1부	3
12	통합	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1부	4
13	근로환경	기업 협약사항	5
14	근로환경	(시설 개·보수 지원시) 건축물현황도 및 해당업종 면허증*	-
15	근로환경	(가점사항) 지자체 수상실적 및 인증기업	-

* 15백만원(VAT제외) 이상 공사는 시공업체의 해당 업종면허증 사본제출

(해당 업종 미등록 업체는 선정 불가.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확인가능)

** 제출서류는 별도 서식파일을 참고(비즈오케이 <https://bizok.incheon.go.kr>에서 확인 가능함)

V 근로환경개선 지원사업 지원가능 항목 예시

분류	지원 가능 항목(예)
근로환경 개선	화장실, 샤워실, 휴게실, 식당, 체력단련실, 탈의실 등 근로자복지환경 시설 개·보수 비용지원
작업장 안전환경 개선	(위험공정개선) 집진시설, 소음방지시설, 이동식크레인, 방호장치, 끼임방지시설, 안전장치(과부하방지 및 비상정지장치 등), 밀폐공간 작업 중 질식재해예방을 위한 설비 등 (근골격계질환 예방시설) 컨베이어, 추락방지시설(채광창, 난간, 고소작업대 등) 안전웬스, 미끄럼방지 바닥공사 등
코로나19 대응 환경개선	마스크, 손소독제 등 소모품 지원

* 표기 이외의 지원항목은 사업 목적에 부합할 시 지원가능 (사전확인 필수)

** 단술 물품구매 지원 불가 (코로나19 관련 소모품 제외)

*** 작업장 안전개선 관련 이동식 설비의 경우 임대(렌탈) 금액만 지원 가능

분 류	지원 불가 항목(예)
근로환경 개선	단순 물품구매 지원불가(물품지원 불가)
작업장 안전환경 개선	-생산설비, 냉난방기, 공기청정기, 안마기기, 냉장고, 세탁기, 건조기 등

VI 유의사항

- 사업 신청 시 **2021. 11. 30** 까지 사업완료 및 채용이 가능한 기업 대상 선정
 - 선정 후 채용 미완료 시 사업비 전액환수조치. 채용약정서 기준 이후 채용인원만 인정됨.
 - 지원금의 70%는 인천테크노파크에서 공급기업(공사업체 등)으로 지급됨.
 - 지원금의 30%는 사업완료 및 신규채용이 확인된 이후 지급되며 사업완료 대비 채용완료가 늦어질 경우 잔금을 수혜기업이 선납 후 정산진행.

VII 문의사항

- 문 의 처 : 인천테크노파크 인천뿌리센터
- 연 락 처 : (Tel) 032-260-0695/0696/0697 (E-mail) jspark@itp.or.kr